

<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시행 유예기간 연장(2차) 및 개선 안내(요약) >

구분		기존	개정(2021.7.21. 기준)
위임장	위임기간	■ 최장 2년	■ 최장 2년 ※ 위임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
	제출방법	■ 우편, 팩스, 방문 제출	■ 우편, 팩스, 방문, 제출 ※ 약국에서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중
	제출 관할지사	■ 지사에 따라 환자주소지 관할로 제출하도록 안내	■ 환자의 주소지 관할 지사와 상관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 가능 → 관할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송하지 않음
	원본보관		■ 위임장 원본 서류 보존 불필요
	약국 사업자등록증 건별 제출	■ 위임인 개인별로 위임장 및 증빙서류 각각 제출	■ 위임인 개인별로 위임장 및 증빙서류 각각 제출 ※ 다만, 약국이 같은 날 환자 2인 이상의 위임장을 묶음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한 장으로 제출 가능
전산청구 시 제출서류	제출서류 종류	■ ①처방전, ②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	■ (환자에게 10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불필요) ■ (환자에게 10% 수납 시) ①처방전, ②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③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세금계산서
	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	■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에 품목별 세부내역 발행하여 첨부	■ 세부품목 기재 없이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 예) “채혈침 외 2종”, “당뇨소모성재료” ※ 환자가 당뇨병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,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환자부담 영수증(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 없음
	거래명세서	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세부내역이 없는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	■ 거래명세서 제출 불필요
	서류보존	■ 3년간 청구서류 보관	■ 전산청구 시 약국에서 별도 보관 불필요
	제출서류 종류	■ (환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100%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	
서면청구 시 제출서류	제출서류 종류	■ (약국이 위임받아 청구하는 경우) - 약국이 환자에게 위임받아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환자의 위임장 및 환자신분증, 약국 사업자등록증 등 위임서류 제출 필요 - (환자에게 10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 - (환자에게 10% 수납 시) ①청구서, ②처방전, ③환자 부담 10%에 대한 카드매출전표(또는 현금영수증), ④공단부담금 90%에 대한 세금계산서 (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에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제출 필요)	
	제출서류 종류		
유예기간	유예기간	■ 2021.7.31.까지 시행 유예	■ 2021.6.30.~8.31까지 유예기간 연장
	유예기간 동안 청구방법	■ 2021년 6월30일 이전 요양비 급여 품목 구입 또는 대여건에 대해 1달간 시행 유예 (위임장 미제출)	■ 2021년 6월30일 이전 발생건 : 위임장 제출 필요없이 이전 청구방식으로 서면청구 가능 ※ 현재 전산시스템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중이며, 개편 완료 시 별도안내 예정 ■ 2021년 6월30일부터 8월31일까지 발생건 : 위임장 제출하지 않아도 요양비 급여청구 가능 ※ 시행유예 적용대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으로도 위임장 없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편 추진중이며, 개편 안내 전까지는 서면청구만 가능
	청구기한		■ 2021년 6.30일 이전 발생건과 유예기간(2021.6.30.~8.31까지) 발생건에 대해서는 2021.9.30.까지 청구 필요 ※ '우편'은 우체국 소인일, '방문'은 방문접수일 기준
기타	기타		■ 위임장 작성·제출을 위한 신분증 구비에 대해 환자 안내 실시(문자발송, 포스터 등 배포) ■ 로그인 유지 시간(10분) 연장 검토 / 임시저장 기능 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정